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의2서식] <개정 2025. 7. 11.>

수익사업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제출일	접수일

신고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수익사업 승인서	
		발급일	발급번호
변경사항	① [ 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② [ 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 ③ [ 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 ④ [ ]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(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	
변경 사유 및 그 예정일	변경 사유		
	변경 예정일	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신고서 제출	→	접수
신고인		신고인		국가보훈부장관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